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7-17호

국제우편규정 제3조 및 제5조2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조2의 규정에 따라 K-Packet의 요금 감액 요건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년 6월 5일

우 정 사 업 본 부 장

K-Packet 감액요건 및 범위

1. K-Packet 요금감액

가. 대 상 :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월 50만 원을 초과하여 K-Packet을 발송하는 이용자

※ 요금 감액을 목적으로 K-Packet 접수를 대행하는 이용자는 감액대상에서 제외

나. 감액요건 및 범위

(금액단위 : 1개월, 만원)

감액요건	50초과 ~100	100초과 ~200	200초과 ~300	300초과 ~400	400초과 ~500	500초과 ~1,000	1,000초과 ~
감액률	5%	6%	7%	8%	9%	10%	12%

※ 감액 시 기준금액은 고시된 요금이며, 보험취급 등 수수료는 제외한다.

2. 특별감액

가. 감액대상 : 제휴국가로 K-Packet을 발송하는 이용자

나. 제휴국가 : 미국, 호주, 홍콩, 베트남, 일본, 싱가포르, 말레이시아, 인도네시아, 브라질, 독일, 스페인, 프랑스, 영국, 러시아, 캐나다, 태국

다. 감액요건 및 범위

감액요건	감액률	비고
제휴 국가행 K-Packet (K-Packet Light)	통 당 5%	고시요금을 기준으로 기본 감액에 추가 적용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,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 2017-12호(2017.5.1.)는 폐지한다.

2. (재검토기한) 이 고시의 재검토 기한은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으로 한다.